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제32호 2026. 8. 12.(수)

조 례

광양시 조례 제2026-2318호

광양시 조례 제2026-2319호

광양시 조례 제2026-2320호

광양시 조례 제2026-2321호

광양시 조례 제2026-232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9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에 위한 광양시 23개 조례의 일
부개정에 관한 조례 18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0

규 칙

광양시 규칙 제2026-981호

광양시 규칙 제2026-982호

광양시 규칙 제2026-983호

광양시 규칙 제2026-98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2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4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에 위한 광양시 15개 규칙의 일
부개정에 관한 규칙 48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3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8

규 정

광양시 규정 제2026-47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14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60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6-206호

광양시 고시 제2026-207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64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66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6-1764호

광양시 공고 제2026-1765호

광양시 공고 제2026-1765호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승인 공고 68

고시송달공고 69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
리 업무 위탁업체 선정 계획 공고 70

회람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광양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7. 28.)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9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18호

붙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9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9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가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2조(「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8조의3제3항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조(「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및 제17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조(「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조(「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9조(「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0조(「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1조(「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5호 중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5조제2항제18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이하 “통합특별시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통합특별시세)”로 한다.

제15조(「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라남도보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조금”으로 한다.

제17조(「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8조(「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로부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로 한다.

제19조(「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0조(「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21조(「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로 한다.

제22조(「광양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광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4조(「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5조(「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및 제3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6조(「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7조(「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8조(「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후단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9조(「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0조(「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1조(「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국·도비”를 “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32조(「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3조(「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4조(「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5조(「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6조(「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7조(「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8조(「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9조(「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0조(「광양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1조(「광양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2조(「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의 개정) 광양시 바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3조(「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44조(「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7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5조(「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6조(「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7조(「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8조(「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9조(「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0조(「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1조(「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도비”를 “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52조(「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53조(「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전라남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제54조(「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5조(「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6조(「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8조제2항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7조(「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5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8조(「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9조(「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0조(「광양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남도-광양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시”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라남도-광양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시”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남도-광양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남도-광양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시”로 한다.

제61조(「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2조(「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3조(「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64조(「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5조(「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6조(「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청교육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8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도”를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도”를 “통합특별시”로, “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7조(「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전라남도지역본부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7항 단서 중 “전라남도지역본부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8조(「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69조(「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0조(「광양시 경관 조례」의 개정) 광양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국비·전라남도비”를 “국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1조(「광양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0조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2조(「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3조(「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로 한다.
제74조(「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광양시 옥외
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5조(「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개정)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도비보조”를 “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보조”로 한다.
제76조(「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7조(「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
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8조(「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광양시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7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9조(「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0조(「광양시 건축 조례」의 개정)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1조(「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2조(「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3조(「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개정)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4조(「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5조(「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의 개정)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전라남도지사로부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6조(「광양시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7조(「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8조(「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국·도비”를 “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89조(「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90조(「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1조(「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2조(「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3조(「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4조(「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95조(「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 물질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6조(「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학교 등 무상 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라남도교육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한다.

제97조(「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학교급 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8조(「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물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7. 28.)에서 의결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
를 위한 광양시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19호

붙임 :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9조”로 한다.

제4조(「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5조(「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광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조(「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8조(「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나목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의 개정)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2조(「광양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5조(「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6조(「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7조(「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8조(「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9조(「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중 “법인 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0조(「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1조(「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2조(「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23조(「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7. 28.)에서 의결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20호

붙 임 :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공개율”을 “공개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7. 28.)에서 의결된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21호

붙 임 :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제7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 국가 또는 광양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액
-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광양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진흥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액

신 · 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광양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7. 28.)에서 의결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조례 제2322호

붙임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광양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광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및 온라인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서비스”란 자료의 대출·열람·참고서비스, 정보이용교육,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 및 비품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 운영

제5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정보서비스 및 정보이용 교육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5. 문화행사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운영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 출입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도서관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이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오염·훼손되거나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및 2년 이상 연체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자료의 대출·열람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증자료) ① 시장은 공중의 열람 및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1조(이동도서관 운영) ① 시장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순회한다.

1.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2. 공동주택단지 등 인구 밀집지역

3. 그 밖에 이동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12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3장 시설 이용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또는 교육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 종교 또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행사 및 판매 행위인 경우

6. 그 밖에 도서관의 공공성 또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
2. 시에 등록된 독서동아리 및 자원봉사 모임
3. 그 밖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1. 시에 등록되지 아니한 독서동아리 모임 및 독서토론 행사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 감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7조(변상) ①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동일한 자료와 시설로 하고,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구성 방침 및 수집·교환·제적·폐기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협력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민 한 책 읽기 ‘올해의 책’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및 독서 분야 전문가

2. 문화·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이용자 중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0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 공개, 위원의 수당·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도서관과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도서관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광양중앙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30	
광양중마도서관	광양시 광장로 14(중동)	
광양희망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22	
광양용강도서관	광양시 광양읍 기두5길 5	
광양금호도서관	광양시 초원길 42(금호동)	
광양광영도서관	광양시 광영로 74(광영동)	
광양꿈빛도서관	광양시 무등길 97(마동)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제6조 관련]

1. 이용시간

가. 학습실

(1) 광양중앙도서관 - 08:00 ~ 22:00

(2) 광양중마도서관 - 08:00 ~ 22:00

나. 자료실

구분	중 앙 도서관	중 마 도서관	희 망 도서관	용 강 도서관	금 호 도서관	광 영 도서관	꿈 빛 도서관
평일	09:00 ~ 18:00	09:00 ~ 18:00	10:00 ~ 19:00	09:00 ~ 18:00	09:00 ~ 18:00	09:00 ~ 18:00	10:00 ~ 19:00
주말	09:00 ~ 17:00	09:00 ~ 17:00	09:00 ~ 17:00	09:00 ~ 17:00	09:00 ~ 17:00	09:00 ~ 17:00	09:00 ~ 17:00

2. 휴관일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이 기타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나. 정기청소일

(1) 광양중앙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

(2) 광양중마도서관 - 매월 네 번째 금요일

(3) 광양희망도서관 - 매월 첫 번째·세 번째 금요일

(4) 광양용강도서관 - 매월 세 번째 금요일

(5) 광양금호도서관 - 매월 두 번째 금요일

(6) 광양광영도서관 - 매월 첫 번째 금요일

(7) 광양꿈빛도서관 - 매월 첫 번째·세 번째 금요일



[별표 3]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제15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규 모	기 준	사용료	비 고
강의실(소)	10~15인 이내	1회(4시간 이내)	15,000	※ 초과 사용료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 1시간당 기준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강의실(중)	16~30인 이내	1회(4시간 이내)	20,000	
강의실(대)	31~50인 이내	1회(4시간 이내)	30,000	

2. 프린터 및 자료 복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단위:mm)	금 액	
		1장 단면	1장 양면
프린터기	A4(210×297)	30	50
복 사 기	B4(257×364)	50	70
	A4(210×297)	30	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2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규칙 제981호

붙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2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2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광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의 개정) 광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및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행정심판위원장”으로 한다.

제2조(「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8조제3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표 제4호서식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광양시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조(「광양시 사무위임 규칙」의 개정) 광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지사로부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로 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광양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광양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개정) 광양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조(「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전단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로 한다.

제10조(「광양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의 개정) 광양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1조(「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으로,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로, “도지사가”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및 제17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단서 및 제8조제2항제1호마목 중 “전라남도 의회 의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5조(「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도비”를 “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16조(「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도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로 한다.

제17조(「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8조(「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9조(「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0조(「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1조(「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22조(「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도비”를 “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23조(「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도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4조(「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5조(「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6조(「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남”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7조(「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의 개정)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8조(「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규칙 제982호

붙임 :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5호 중 “등기부등본”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등기사항증명서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중 “등기부등본”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조(「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조(「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



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5항 본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조(「광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현장 운영 규칙」의 개정) 광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현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양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 중 “토지등기부등본상”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23호서식, 제25호서식 중 “택지조성과”를 각각 “산단택지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토지등기부등본”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제23호서식, 제25호서식 중 “산단과”를 각각 “산단택지과”로 한다.

제8조(「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23호서식, 제25호서식 중 “택지조성과”를 각각 “산단택지



과”로 한다.

제9조(「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 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감정평가법”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 중 “토지등기부등본상”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23호서식, 제25호서식 중 “택지조성과”를 각각 “산단택지 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토지등기부등본”을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조(「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 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을 “「예산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같 은 법 시행령”으로, “·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를 “, 「광양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21조”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의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영 제4조제4항”을 “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광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 채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



2호”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로 한다.

제12조(「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3조(「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4조(「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5조(「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의 개정)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규칙 제983호

붙임 :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을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설 사용신청)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1개월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시설 사용허가) ①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제15조 관련)

□ 부대시설 사용허가 대상시설 : 광양시립도서관

신청인	성명(법인명)		성별	남 / 여	연락처	
	대표자명					
	주소					
공연·교육·행사의 명칭						
공연·교육·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일 시간 회)	참가인원 명		
변경 신청 내용		변경사항	○변경건명 : ○당 초 : ○변 경 :		변경사유	
사용 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회의실(), 문화교실(), 시청각실()			
		부속설비	빔프로젝트(), 유선핸드마이크(), 무선핸드마이크(), 핀마이크(), 앰프(), 냉·난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광양시립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1)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 관련 확인 서류, 2) 부대시설 신청 이용자 통계자료 작성 및 이력 관리, 3) 민원처리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 관련 증빙서류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증(제15조 관련)

☐ 부대시설 사용허가 대상 시설 : 광양시립도서관

신 청 인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명	사 용 료	허가조건
	. . .부터 . . .까지		원	
	. . .부터 . . .까지		원	

년 월 일

광양시장

도서관과장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7조 관련)



신청인	성명 (법인명)		성별	남 / 여	연락처	
	대표자명					
	주소					
사용 시설명						
사용 목적						
감면 사유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광양시립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1)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 관련 확인 서류, 2) 부대시설 신청 이용자 통계자료 작성 및 이력 관리, 3) 민원처리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 관련 증빙서류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명)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규칙 제984호

붙 임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급수지역에서 공동급수용으로 이용되는 지하수 및 하천수 등을 사용하여 배출하는 하수 : 면제

제3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14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박 성 현

광양시 규정 제477호

붙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14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14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개정)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도비”를 “국·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조(「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광양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광양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광양시 일상감사 규정」의 개정) 광양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조(「광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개정) 광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조(「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개정)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7조(「광양시 보안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광양시 보안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광양시 인사운영 규정」의 개정) 광양시 인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의 개정)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0조(「광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광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5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개정)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의 개정) 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광양시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의 개정) 광양시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도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으로 하고, “도”를 “통합특별



시”로 한다.

제8조 중 “도”를 각각 “통합특별시”로,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도”를 각각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도”를 각각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를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및 제3호 중 “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중 “도”를 각각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의 개정)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도선길 144-8	2026. 8. 12.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붙임참조)
2	이 하 여 백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1.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옥룡면 도선길 144-8	2026. 6. 2. (2026. 8. 6.)	2026. 8. 12.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2.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212-9 외 3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8.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4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839-1, 83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사곡로 172-7	20260812	20081001	법정리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마동 18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눈소7길 12-8 (마동)	20260812	2019111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205-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해랑1길 5	20260812	20200603	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4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21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해랑2길 29	20260812	20200603	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승인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승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광 양 시 장

1. 공고 목적: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승인사항 열람

2. 주요 내용

가. 목 표 연 도 :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 광양시 전역(1읍/6면/5동)

- 면적: 464.33km²

다. 내용적 범위

- 광양시 도시쇠퇴 진단 및 분석

- 광양시 도시재생 기본구상 설정

-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등

3.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 기간: 2026. 8. 12. ~ 9. 11.(30일간)

나. 열람 장소: 광양시청 도시과 재생전략팀

4. 의견 제출 방법

가.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도시과 재생전략팀(061-797-2839)로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5.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 도시과 비치)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광 양 시 장

-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 2026. 8. 7. ~ 2026. 8. 24.(17일간)
- 3. 공고장소 :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4. 공시송달 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아래 참조
 - 다.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건 축 물 소 재 지	처 분 원 인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처분 당사자	반 송 주 소	반송사유
광양시 중동 1576-1번지	「건축법」 제14조 위반 가. 창고시설 컨테이너조 2층 18㎡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설0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남가1길 31	폐문 부재 등

- 5. 유의사항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현수막지정계시대 운영·관리 업무 위탁업체 선정 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
광고물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0조 규정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의
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현수막지정계시대 운영·관리 업무 민간위탁업체 선정 하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2.

광 양 시 장

1. 위탁기관: 광양시청

2. 위탁기간: 2026. 10. 1 ~ 2029. 9. 30. (3년간)

3.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 간판(단,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
제외)

1)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

2)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
출간판

다. 옥상간판(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것

2)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
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마.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 별론

바.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
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사.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
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4.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대상: 현수막 고단 게시대(행정용, 상업용), 저단형, 육교, 정치형, 세로형 선전탑 등 게시대

5. 위탁받을 자의 임무

-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 나. 안전도 검사업무 수행 중 허가 된 사항에 위반한 사실 발견 시장에게 즉시 보고 등
- 다. 현수막의 표시 신고 의 접수·처리 및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및 철거
- 라. 현수막 표시 신고에 따른 신고수수료(도로점용료 포함) 및 민원서류 접수 대행
- 마.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순회 점검 실시
- 바. 게시된 현수막 관리 및 신고내용 무단 변경이나 미신고된 불법현수막 철거
- 사. 훼손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 아. 안전검사 실시 광고물 및 현수막게시대 관리·운영 상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신속한 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
-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신청자격

- 가.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광양시 소재 옥외광고업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나. 시설기준 등
 - 1) 사무실
 -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7. 접수기간 및 장소

- 가. 접수기간: 2026. 8월 12일(수) ~ 8월 27(목) 18:00까지
- 나. 접 수 처: 광양시청 도시과 도시경관팀 (☎061-797-2169)
- 다. 접수방법: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 1)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1부. [별첨1]
- 2)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1부. [별첨2]
- 3) 법인(단체) 소개서 1부. (주요사업 활동실적 포함) [별첨3]
- 4)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및 법인(단체)등기부등본 각1부.
- 5)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1부.
- 6)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1부.
- 7) 사무위탁관리 실적 증빙서류 1부.
- 8) 시설장비 및 사무실, 작업장 등 확보현황 등 그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각1부.
- 9) 검사인력 자격증관련 증빙서류, 상시근로자 재직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각1부.
- 10) 기타 업체의 자산규모, 업무수행관련 보험가입실태 등 증빙서류 각 1부.
- 11) 행정처분내용 1부. [별첨4]
- 12) 그 외 신청자격 및 조건을 충족시키는 증빙서류 1부.
- 13)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서(A4 자유형식) 1부.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A4용지로 세로, 편철은 좌철로 제본하여 13부 제출

8. 심사 및 통보

가. 심사일시 및 통보: 2026. 9월 중

나. 선정방법

- 1)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를 근거로 서류심사를 하되 총점 6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자체 심의를 거쳐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의해 최고점수를 얻은 법인 또는 단체 선정
- 2)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적격자 선정

9. 민간위탁 계약 해지

- 공고 요건(제6호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 공고 요건(제6호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 등)에 미달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한다.



[별첨1]

■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3.>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3]

법 인 (단 체) 소 개 서

1. 법인(단체)현황

법인(단체)명		대 표	
소 재 지			
설립일자		자산총액	

2. 사무실 현황

(단위 : m²)

사 무 실	보 관 창 고	작 업 실	주 차 장	기 타

3.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비 상 근	상 근				비 고 (자격증 등)
		직 책	-	-	-	

4. 보유장비현황

장 비 명	수 량	용 도	차량번호	비 고

5. 민간위탁 관리실적

위 탁 업 체	위 탁 기 간	위 탁 내 용	비 고



[별첨 4]

※각 항목마다 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 업 정 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